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의의와 실제

이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1. 들어가는 말

2016년은 한국의 농인¹⁾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이다. 2013년 발의된 지 3년 만에 비로소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해이기 때문이다. 청인²⁾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법이지만 농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화’³⁾는 그동안 독립된 언어라기보다는 한국어를 단지 손으로 일대일 대응을 하여 표현하는 보조 수단 정도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보급 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독립된 하나의 언어로서의 ‘수화’의 지위를 보장하고 이를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2013년에 이러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모두 4개의 ‘수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⁴⁾ 이후 이 4개 법안은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2) 청각 장애가 없는 사람을 농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3) ‘수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일단 따옴표로 처리하였고 2장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원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으로 병합되어 통과되었고 같은 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의결되었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6년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되어 ‘수화’의 발전과 보급 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농인에게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한국수화언어법」과 그 시행령의 세부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의미

2.1. ‘수화’와 ‘한국수어’

1장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수화’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수화’가 한국어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어를 음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문자(한글)로도 표현하는 것처럼 ‘수화’는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수화’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문법과 어휘 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이다. 법 명칭이 ‘한국수화언어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가 나라마다 다른 것처럼 ‘수화’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한국’을 붙이고 ‘수화’가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뒤에 ‘언어’라는 말을 더해서 ‘한국수화언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한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한국수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⁵⁾

4) 한국수어법안(이예리사 의원 발의 '13. 10. 22),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이상민 의원 발의 '13. 8. 20), 수화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발의 '13. 10. 8),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진후 의원 발의 '13. 11. 26)

이와 같이 한국수어를 독립된 언어로 인정하고 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하는 것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농인의 모어(제1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수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인에게 한국어는 영어, 독일어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학습해야 할 제2언어이며 따라서 한글 역시 한국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새롭게 익혀야 하는 문자이다. 간혹 청인들 중에서 ‘한글로 적어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수화로 통역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수어를 한국어의 표현 수단으로 오해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글로 통번역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농인은 한국어(한글)로 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수어로 통역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농인과 청각 장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또 다른 큰 의의는 ‘농인’을 청각 장애인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 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공식 법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청각 장애인이 아닌,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모든 농인은 청각 장애인이지만 모든 청각 장애인이 농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인공 와우 수술을 받거나 구화를 익힘으로써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농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청인 중에서 한국수어를 제2언어로 익혀서 사용하는

5) 이후 특별히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수어’로 통일하겠다.

6) 이런 맥락에서 ‘통역’은 매우 적절한 용어이다. 영어를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역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 역시 ‘농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농인’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한국수어가 이러한 농인의 모어임을 밝힌 것도 「한국수화언어법」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농인’ 외에도 ‘농문화, 농사회, 농정체성’ 등이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한국수화언어법」 세부 내용과 의미

2장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하여 한국수어와 농인의 지위가 바르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의 세부 내용과 의미를 주요 조항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1.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법 제2조에는 2장에서 살펴본 법 제정의 의의가 잘 드러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1항에서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라고 선언한

부분이다. 이 선언의 의미는 제3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제3항에서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가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농인등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박물관을 갔을 때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충분히 원하는 일을 처리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항은 사회 전반으로 한국수어를 확산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모든 국민이 아니라 ‘농인’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 공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공용어이기 때문에 공문서나 도로 표지판 등이 의무적으로 2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한국수어는 ‘농인’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3항에서 드러났듯이 농인들이 원할 때, 필요할 때에는 충분히 한국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는 않다.

3.2.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에 따르면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사항도 들어 있는데 이 중에는 현재의 한국수어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선진적인 내용도 꽤 담겨 있다. 한국수어의 교육이나 보급, 통역 등은 법 제정 이전에도 민간 등에서 부족하나마 진행된 부분이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교육과 보급이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수화통역사가 통역 관련 부분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수어 전문용어 표준화의 결과물로는 분야별 전문어 사전 편찬 등이 있다. 그러나 농정체성과 농문화에 관한 사항이나 남북한 한국수어에 관한 사항 등은 새롭게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고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만한 환경조차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1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어의 교육이나 보급, 전문인력 양성 부분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기반부터 다시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8조는 타 법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모두 수합하여 평가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⁷⁾ 이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결과(추진실적)를 확인함으로써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8조에서 기본계획뿐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까지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그 강제성을 더하고 있다.

3.3. 실태조사 실시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통지 부분은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수화언어법」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수어에 대한 다양하고도 자세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청각 장애(인) 일반에 관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조사는 15개 유형의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중 청각 장애(인)에 관한 내용은 장애 유형에 따른 현황 파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수어에 대해서는 한국수어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밖에 없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수어와 농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4.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법 제14조는 간략해 보이지만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제2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제시한 한국수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한국수어 교육은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도 별도로 없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모두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14조에서 교재·교육과정 개발, 교원 양성 등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였고, 시행령 제4조 등에서는 국가 자격인 한국수어교원 자격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교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법으로 정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기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양질의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어가 현재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교재나 교육과정, 그리고 일정 정도 이상의 질이 담보된 교원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교재와 교육과정, 그리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한국수어교원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교재, 교육과정, 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질의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행령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2급에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둬으로써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을 통하여 한국수어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어 연구나 보급을 위한 인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황에서 양질의 한국수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유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⁸⁾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 등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사용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수어교육원’은 없던 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수어 관련 기관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한국수어교육원을 통해 보급하고 교육함으로써 체계적인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5. 한국수어 능력 검정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8) 실제로 법 제정 이후 일선 대학에서 한국수어 교육과 관련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대학원 과정을 검토하는 등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15항은 농인과 청인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의 한국수어 능력을 국가에서 검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항이다.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인이 한국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 되려면 농인뿐 아니라 청인의 한국수어 능력도 높아져야만 한다.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농인과 청인 모두에게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수어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 인구가 확대되면 검정시험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⁹⁾

9) 유사한 제도로 국어능력 검정시험이 있다. 현재 이 시험은 경찰 승진 시험이나 일반 회사 입사 시험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4. 「한국수화언어법」의 한계와 남은 과제

「한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을 추진하는 중심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제11조, 제12조, 제16조이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 장애를 지닌 아동이 태어나거나 중도에 청각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이를 인지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조직인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이다. 이곳에서 등급이 명시된 장애인증을 발급받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병원의 진단서는 필수 서류이다. 따라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아동이나 중도 청각 장애인이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병원(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에서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는 농아동의 경우 한국수어 습득은 대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농아동은 원천적으로 이러한 습득이 불가하다. 따라서 제12조에서 명시한 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현재는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아동을 둔 청인 부모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조항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이 협의체를 통해 이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항은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로 수업을 받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학교 교사가 한국수어로 교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초중등교육법으로는 농학교의 한국수어 사용 교사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는 장애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학교에만 근무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국수어 가능 여부가 자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 대신 농학교 근무 교사들에게 한국수어 교육을 시행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한국수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민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어통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병원이나 관공서 등을 이용할 때 수어통역센터를 통하여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공영방송에서도 수어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양이나 질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인들이 통역을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양질의 수어통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수어 관련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5. 맺음말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언어권을 법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수어의 보급과 발전, 교육, 농문화와 농정체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수어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앞서 가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서 농인의 언어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법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법 시행에 맞추어 국립국어원에 특수언어진흥과가 신설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담 부서에서 장기 계획 아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 시행 초반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으나 법 제정 본연의 취지를 잊지 않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농인의 언어생활, 더 나아가 농인의 전반적인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